

[별표 1]

## 출석 인정 일 수

구 분	대 상	일 수
훈련·시험	예비군·민방위훈련,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(자격증·면허증 등)·입사시험, 기능경기대회 출전	소요일수
결 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	2일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
출 산	배우자	5일
질병입원	본인	$\frac{\text{소정훈련일수}}{100}$ 분의 10 이하
휴 가	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	월 1일 (적치 또는 분할 사용 가능)

\*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(훈련·시험, 결혼, 사망, 출산, 질병입원, 휴가)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,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(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)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질병입원인 경우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출석을 인정하되,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.